

골板紙包裝·物流產業政策

Corrugated Packaging & Logistics Industry Policy

이 난은 골판지포장 산업과 물류 산업 관련 정부 정책과 산업계 정책 건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98年度 中小企業 育成施策

資料 : 通商産業部, 中小企業廳

目 次

■ 98年度 中小企業 育成施策의 基本方向

1. 對內外 經濟與件 變化
2. 向後 中小企業 政策基調
3. 98年度 中小企業 育成施策의 基本方向

■ 98年度 中小企業 育成施策

1. 벤처型 中小企業의 創業活性化
2. 中小企業의 構造高度化
3. 中小企業의 安定的 經營與件的 造成
4. 中小企業 海外進出 促進
5. 中小企業 人力的 圓滑한 供給 推進
6. 地方 中小企業의 育成 發展
7. 영세 小企業 支援

1998年度 中小企業育成施策 基本方向

基本方向

1. 對内外 經濟與件 變化

- 개방의 진전에 따른 경쟁의 심화
 - WTO 체제 출범, OECD 가입 등으로 실물·투자·자본 이동 등 모든 분야에서 대외개방이 가속화
 - 국내외 시장의 구분이 없어져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자만이 생존 가능
- 소비자 욕구의 질적 변화
 - 소득수준의 향상, 개방의 진전 등으로 소비자 욕구의 고급화·세분화가 가속
 - 빠른 기술개발 속도로 인해 제품개발주기가 단축
-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경쟁력 약화
 - 임금, 금리, 물류비, 공장용지가격 등 생산요소 가격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제도가 규제로 작용하여 경제구조 전반에 피로가 누적

국가경제의 기반이 되는 우리 중소기업은 이와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

2. 向後 中小企業 政策基調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경제활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
 -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은 전체 제조업체수의 99%, 고용의 69%, 생산의 47%, 수출의 42% 차지
 - 90년대 미국경제의 경쟁력 회복도 벤처 중소기업들에서 비롯
 - 일본과 EU도 벤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
- 대기업에만 의존하던 경제체제의 한계 노정
 - 소비자 욕구의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소량 다품종 생산체제는 중소기업에 유리
- 산업구조 조정의 주역이며 고용창출의 원천
 - 중소기업의 민첩성과 유연성은 빠르고 다양한 기술변화에 적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통하여 젊은 기술인력의 고용 확대 가능

■ 보호의 대상에서 경쟁의 주체로

- 모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정책기조 탈피

- 능력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의 주체가 되도록 여건 조성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확보와 공정거래 질서를 기반으로 경쟁 촉진 유도
-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 시장진입에 장애가 되는 각종 인·허가기준 정비
 - 사업전환 관련 자금 및 세제지원제도 정비

■ 서비스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 강화

- 창업단계 및 창업이후 중소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의 행정규제 혁파
 - 부처 이기주의적 「칸막이식 행정」분식
 - 정부는 새로운 지원보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비용부담 절감효과를 거양
- 민간 주도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기능 활성화
 - 창업 컨설팅, 기술지도, 경영상담, 자동화지원 등

3. 98年度 中小企業育成施策의 基本方向

- 신기술·신산업분야의 벤처형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 벤처형 중소기업 창업을 통해 소량 다품종 시장에서 고급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
 - 고급 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도 벤처형 중소기업 창업 확대는 필수적
 - 미국 고용증가율 (91~95 기간 평균) : 벤처기업 34%, Fortune 선정 500대 기업 △4%
 - 벤처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제 구축
 - 자금, 인력, 판로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 촉진
 - 국내 임금수준의 상승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 또는 공장의 해외 이전이 불가피
 -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동화·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지원 시책의 지속 추진
 - 외국인 투자 유치, 기술도입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구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과 하도급관계에 있어 구조 전환기에 대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대량 연쇄도산이 우려
 -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위하여 자금, 인력, 판로 등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

中小企業育成施策

1. 벤처型 中小企業의 創業活性化

가 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 확충

■ 다양한 창업투자재원 마련

- 연·기금,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의 벤처기업 투자 허용
 - 73개 연·기금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 없이 운용자금의 10% 범위내에서 벤처기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
 - 투자신탁 및 보험자산의 벤처기업 주식보유 허용
- 외국인의 벤처기업 주식취득 제한 철폐
 -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주식 취득 한도(23% 이내)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철폐
 - 아울러 벤처기업의 해외주식 발행을 전면허용
-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출자 유도
 -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출자를 외국인투자자로 간주하여 외국자본의 원활한 도입 촉진
외국인 투자실적(88~96. 8) : 4,412억원(창업투자조합 총결성액의 52.2%)
 - 외국인 출자금에 대해 최초 투자시점까지 외화예금 예치 허용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도입한 외자를 창업투자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 강구
-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시 총액출자 예외한도 인정 범위 확대
 - (현행) 당해기업 주식총수의 20/100 → (확대) 30/100
- 창업투자자금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창업투자조합 출자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창업투자회사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
 - 엔젤캐피탈(Angel Capital)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투자조합에 세제지원 추진
 - 중소기업의 창업 및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등 벤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면제 추진
 - 금융실명제 보완입법에 포함하여 추진방침

■ 직접금융 조달여건 개선

- 코스닥시장 등록 벤처기업의 증권발행에 대하여 신종사채 발행허용 등 거래소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우대조치 부여
- KOSDAQ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주식시장으로 전면 개편
 - 기존 KOSDAQ시장을 확대·개편하여 미국의 NASDAQ과 같이 거래소시장과 차별화된 경쟁시장으로 집중 육성
 - 시장운영주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율규제기능을 다수의 이익대표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하여 공익성 제고
 - 외국인투자 허용, 신주모집 확대, 시가증자 허용 등 시장거래 활성화조치 시행

나. 벤처企業用 立地供給 擴大

■ 벤처빌딩 및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입지관련 규제완화

- 벤처단지 조성자에 대한 국·공유지 매각시 수의계약 허용,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제(5년) 도입 및 기부채납의무 면제

- 벤처빌딩에 대하여 도시계획지역 구분에 관한 특례적용 및 용도변경 허가 면제 (1천 m² 이하의 공장)

■ **벤처기업의 입지관련 부담경감**

- 벤처빌딩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와 미술장식설치의무 배제

■ **기존 단지의 벤처단지 전환을 통한 입지공급 확대**

- 기술연구집단지(Techno-park) 조성지원
 -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학·연 연구개발자원의 집적을 통한 기술혁신과 벤처기업 창업의 산실역할을 수행하는 Techno-park 조성을 확대
 - 금년도 시범단지 조성에 이어 9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산업계의 수요 등을 감안, 테크노파크 지정 을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벤처단지 적극 조성
 - 구로공단에 벤처빌딩을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첨단정보·지식산업이 집중된 벤처타운 조성
 - 외자를 도입하여 임대분양용 벤처단지 조성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EXPO 과학공원 내의 일부 매각대상 제외부지를 대덕연구과학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벤처단지로 조성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원매각자금을 재원으로 추진
 - 벤처기업을 위한 임대용 공간 마련은 물론 R&D 센터, 시제품 생산시설 등 벤처지원시설을 유치
- 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자체 벤처단지 및 정보통신전용 벤처단지 등 조성 추진

다. 技術開發 및 高級技術人力 供給 圓滑化

■ 「기관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제도」시행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기관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제도」 도입·시행
 - 참여기관 :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등 10개 정부부처 및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9개 정부 투자기관
 -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연구개발예산의 목적 및 해당분야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지원계획」을 매년도 수립·시행
 - 통상산업부가 각 부처와 기관의 연차별 계획 및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 **기술개발 지원 확대**

- 기술담보제, 기술출자제 등을 통한 기술가치의 상업화기반 구축
 - 기술의 현물출자 허용 및 기술출자 활성화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술에 대한 평가기관 지정 및 육성
 - 특히, 실용신안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개별기술을 담보로 인정하는 기술담보제도 확대시행
 - 창업예비단계의 교수, 연구원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 특례보증제도 확대

- 기술복덕방, 벤처사랑방 등을 통한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체제 구축
 - 연구기관,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D/B화하여 창업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기술복덕방」을 현재 운영중인 생산 기술연구원 외에 대학에도 설치 유도
 -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벤처기업, 벤처투자자, 전문가집단(회계사, 변리사 등)을 상호연결하는 만남의 장으로써 「벤처사랑방」개설·운영
- ◎ 고급기술인력 공급 확대
 - 국·공립대학 교수, 국·공립연구소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참여시 휴직 허용
 - 주식액면가 인하(5천원 → 1백원)를 통하여 스톡옵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고급기술인력의 벤처기업 취업 촉진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창업 벤처기업으로 전직 허용 및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병역특례 수시지정
 - 기술인력 양성·훈련
 -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

표준과학연구원의 정밀측정 : 1,200명 - 유치 과학기술자의 중소기업 지원(260명)
 기계연구원의 용접기술 : 100명

라. 벤처기업의 經營安定基盤 造成

■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및 취득세·등록세 75% 감면
- 「신기술창업지원단」설립·운영
 - 대덕연구단지 한국과학기술원내 「신기술창업지원단」설립(97. 9월) 자금·인력·기술정보·연구장비 등 창업을위한 종합지원체제 구축

■ 기존 중소기업의 벤처화 지원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벤처캐피탈기능을 제고하여 기존 중소기업의 벤처화를 지원
-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창업투자회사간에 벤처캐피탈 관련 세제상의 형평성 확보를 통해 벤처캐피탈의 경쟁 촉진
-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에서 우선적 신용보증 지원

마. 女性벤처企業育成方案 摸索

■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정보 지원

- 여성전용 벤처사랑방 운영계획 수립·추진
-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제도 운영시 여성벤처기업의 우대지원방안 모색

■ 여성벤처기업의 입지애로 완화

-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빌딩 입주시 여성벤처기업 우대방안 모색
 - 국·공유지 활용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빌딩 건설시 보육시설 설치의무화방안 등을 모색

2. 中小企業의 構造高度化

가. 中小企業範圍의 合理的 改編

- 2000년대 산업여건에 적합토록 중소기업범위의 전면개편 추진
 - 세분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범위의 단순화 추진
 - 현재 산업연구원에서 중소기업범위 등을 연구중(97. 10월말 완료예정)
-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98년 상반기중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하여 하반기중 시행

나. 中小流通業의 構造改善 推進

■ 제2차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98 ~ 2002) 착수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제1차 구조개선사업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제2차 구조개선사업을 착수
 - 2차 사업기간중 매년 5,000개씩 25,000개 업체를 지원
 - 채권발행, 외화자금 등으로 향후 5년간 매년 2조원, 도합 10조원의 재원 조성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한도 확대 : 적립기금의 5배이내 → 10배이내
-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구조개선 기본계획」수립·시행
 -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및 업종별·부문별 추진방안 마련
- 지원효과 제고를 위하여 지원방식 개선
 - 기존의 기능별 지원방식에 업종별 지원방식을 추가도입하여 지원효과를 제고
 - 중소기업학회의 「업종별 세부지원방안」연구가 완료(97. 12월말) 되는 대로 '98 상반기중 추진
 - 설비자금 지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운전자금 병행지원 방식 도입
- 자동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및 지도확대
 - 연수규모 : (97) 21과정 2,000명 → (98) 42과정 4,020명
 - 지도업체 : (97) 340개 업체 → (98) 340개 업체
- 자동화설비 시험·평가센터 건립추진 (99년 완공목표)
 - 중기청 부지(500평) 내에 연면적 2,000평 규모로 추진

■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 정보화투자를 위한 장기저리자금 융자지원
 - 정보화투자를 위한 정보화지원업체 육성 등 120억원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기술정보 유통망 구축

- 창원·마산지역 시범사업을 모델로 전국 주요공단으로 확산 추진
-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여천시와 Matching Fund방식으로 사업 추진
- 중소기업 기술정보화 지도
 - 정보화 기술지도 실시 : (98) 120업체 대상
- 중소기업 실정에 적합한 CAD/CAM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
 - CAD/CAM 표준모델 개발보급(1종) 및 추진업체 선정지원(50업체)
 - 업계의 CAD/CAM 응용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요원 500명에 대한 교육 실시

■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추진

- 공장집단화 및 공동시설 운영 등을 통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도모
 - 중점지원대상 : 제조업 위주 → S/W, 물류분야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도 포함
 - 사업내용 : 공장집단화 90개소, 창고공동화 7개소, 공동전시판매장 3개소 등 지원
 - 지원금액 : (98) 1,705억원

다. 中小企業의 技術·品質 水準 提高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협력체제 강화
 - 지방대학과 지방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지원확대
(97) 72개 컨소시엄, 81억원 → (98) 100개 컨소시엄, 101억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확대 추진
 - 기술개발에 따른 리스크 분담을 위한 자금보조 지원 확대
 - (97) 300억원 → (98) 400억원
 - 생산현장기술자를 대상으로 기술혁신 교육 실시
 - 98년 대상인원 : 5,000명
-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의한 기술개발 자금지원
 -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관련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98년 1,600억원)
 - 우수한 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담보대출 지원(98년 400억원)
- 기술지도의 내실화 도모
 - 생산기반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
 - (97) 4,612개 업체 → (98) 5,000개 업체
 - ISO 인증지도사업 확대 실시
 - (97) 256개 업체 → (98) 300개 업체

■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기반 구축

- 이업종 교류사업의 활성화
 -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및 공동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이업종 교류회 결성의 지속적인 확대

- (97) 300개 그룹, 4,500개 업체 → (98) 350개 그룹, 5,000개 업체
- 모·수탁기업간 기술협력 촉진 여건의 조성
 - 모기업 또는 수탁기업체협의회가 기술협력자금을 조성하여 협력중소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 「100 PPM 품질혁신사업」의 지속적인 확산
 - 「100 PPM 표본업체」선정 확대
 - (97) 500개 → (98) 700개
- 산업표준화 기반 구축
 - 신기술·신수요분야의 규격 확충
 - 정보, 환경, 첨단기술, 섬유, 전자재분야 등 330종
- 중소기업 기술무상양허사업
 - 출연(연),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에 무상양허
- 중소기업 기술자문사업
 - 과기처 출연(연)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 기술지도
- IR 52 장영실상 시상제도 운영
 - 우수 국산 신기술제품에 대해 시상 홍보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
 - 매주 1개 제품, 연 52개 제품 시상
 - 시상제품에 대해 홍보 및 금융우대 지원
- 국산신기술 인정 및 교류
 -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우수성 인정을 통한 시장진출 지원
 - 반기별(연 2회) 시행
 - 인정기술에 대한 홍보, 마크부착, 금융우대지원, 공동기관 전시회 개최지원 등
 - 국산신기술(KT) 인정업체 회원상호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 기술개발 및 시장지출 애로 해소방안 모색
 - 회원사 공동이용을 위한 협동사업
- 테크넷 구축
 - 국내 우수 신기술·신제품을 인터넷의 가상공간에서 종합 전시
-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육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과 지방대학의 연구활성화를 통한 협동연구 촉진
 - (97) 14개 센터 → (98) 29개 센터 운영
-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지원시책 운영(97년 50개)
 - 조세감면, 자금지원, 우선구매 등
-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관리 지원강화**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 등 융자 지원
 -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환경기술개발 및 연구자금 등을 재원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

- 98년 지원규모 : 1,110억원(연리 6.0%)

○ 환경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 오염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설치비용의 3% (국산기자재 사용시 10%)

- 환경산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 투자금액의 3% (국산기자재 사용시 5%)

- 수입 환경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 관세액의 50%

○ 환경관리공단 등을 통한 환경기술 지원 및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 오염측정기술 지원, 환경관리시설의 성능검사 및 안전진단 실시 등

○ 중소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구축을 위한 환경경영지침 등 개발·보급 추진

- 중소기업의 환경친화적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지도·단속 등 면제

3. 中小企業의 安定的 經營與件의 造成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중소기업공제사업의 확대

- 중소기업의 가입확대와 공제사업기금의 규모 확대

· 가입자수 확대 : (97) 10,500개 → (98) 12,000개

· 기금조성 규모 : (97) 3,000억원 → (98) 3,500억원

- 연쇄도산방지를 위한 제1호대출(연쇄도산방지대출)의 효율성 제고

· 대기업부도시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제1호대출의 연쇄부도 방지기능을 제고 제1호대출의 비중 확대 : (97) 47.8% → (98) 64.0%

○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 지속 지원

-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금 지원

· 98년 지원규모 : 100억원

○ 중소기업 외자 활용기회 확대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외자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에 배분하여 활용토록 하는 방안 강구

- 중소기업과 외국기업간의 합작투자도 적극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으로 신용보증 여력 확충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 (97) 6,000억원 → (98) 7,000억원

- 기술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우대제도의 지속적 보강

○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를 위하여 설립되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을 활성화

지역신용보증조합 : (97) 6개 → (98) 10개

■ **어음보험제도의 확대실시**

- 어음보험제도의 역할 제고
 - 보험기금 확충으로 구매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한 연쇄도산방지 여력 증대
 - 업력 3년 이상으로 연간매출액 10억원이상인 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억원 이내로 보험인수
- 민간주도형 어음보험제도 운용 추진
 - 97. 9월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하는 어음보험사업을 장기적으로 보험요율 자율화 등을 통한 민간보험 방식의 운용방안 모색
 - 정부주도의 일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와의 차별화 필요
 - 정부주도시 제도의 비효율성 및 과중한 재정부담 우려
 - 민간의 어음보험 취급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

- 주기적으로 하도급거래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거래관행 발굴 및 개선방안 강구
 -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상시조사체제 구축
- 중소기업 거래애로 신고센터 등의 운영 활성화
 - 「중소기업 거래애로 신고센터」: 중소기업청과 11개 중소기업청 지방조직
 - 97. 8월 설치한 「중소기업 거래애로 전자우편합」운영 확대

■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 지원**

-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시설의 확충지속
 - 중소기업 제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기능을 담당할 종합유통센터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 (99. 10. 완공예정)
 - 98년중 중소기업진흥채권을 발행하여 부족재원 조달(229억원)
 - 잠실·여의도에 이어 대구·부산 등에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을 추가 건립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 확대
 - (97) 43개 기관, 30조원 → (98) 61개 기관, 35조원
 - 공공기관의 구매관련 종합정보체제 구축을 위한 구매정보 S/W 개발·보급
- 중소기업 제품의 이미지 제고 및 판매력 증진을 위한 공동상표 개발 및 전시판매장 설치 등의 지원자금 확대
 - 공동상표 개발지원 확대 : (97) 1억원 → (98) 2억원
 - 전시판매장 설치 등 지원자금 확대 ; (97) 40억원 → (98) 55억원
- 방송사·신문사들과 공동으로 우수제품 전시판매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홍보 및 판매 촉진
 - 98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도자기·국제의류 박람회 등

4. 中小企業 海外進出 促進

■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충

-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확대
 - (97) 203개 업체 (5.2억원) → (98) 311개 업체 (9억원)
- 수출입 금융제도 개선
 - 수출 착수금 영수한도 확대
 - 계약시 50%, 제작기간중 40%, 인도시 10% → 계약시 60%, 제작기간중 30%, 인도시 10%
 - 중소기업 연지급 수입기산 연장 : 150일 → 180일
 -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하여 우대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의 박람회,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사용 공동브랜드에 대한 공동상표 개발자금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16개 시·도와 공동으로 무역실무, 금융, 수출보험, 해외마케팅 등 정부의 수출지원제도
 - 수출 상대국의 무역장벽 사례

■ 인터넷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표준화된 "한국수출상품 Homepage" 통합 D/B 구축
 - 무역협회 등 4개 기관의 중소기업 Homepage의 통합 D/B 체제 구축중(연말까지 서비스개시 예정)
 - 중소기업 Homepage 구축량 : (97. 8월말) 2,507개사 → (98 계획) 8,350개사
 - 외국바이어의 수출상품에 대한 품목별, HS별, 기업별 검색 편의 보장
 - Homepage 이용도(상품별, 지역별) 분석결과를 시장개척 등 정책수립에 활용
 - 앞으로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축하고 있는 지역 사이버 마켓몰과 통합을 추진
 - (97) 1개소 (경인지역) → (98) 7개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남, 전북, 경북 및 지방중소기업청)
- 한국수출상품 Homepage와 전자상거래 알선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 중소기업 사이버마켓 기반 구축
 - 중소기업수출거래알선시스템(KOBO)과 연계체제 구축(98)
 -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스템(ICES 등)과 연계추진

■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 판매장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도모

- 기존 공동판매장의 중소기업제품 해외 전시·판매기능 내실화 유도
 - 한국상품상설전시장(KMC) 14개소, 한국상품공장직매장(KFO) 1개소 운영개선 추진
- 기타 해외 유통시설의 적극적 활용
 - 한국유통센터(2개소)의 직접 판매기능 강화
 - 농업무역관(7개지역)의 해외홍보, 시장개척, 수출알선기능 강화

■ 해외투자 활성화

- 해외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체계 구축
 - 해외공관, KOTRA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현지 지원
 - 해외투자사절단 파견 및 산업협력촉진단 파견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진출방안 모색
 - 대기업의 경험 및 해외조직망을 이용한 중소기업투자 촉진
 - 대기업의 현지 부품조달 협업화 단지 육성지원

5. 中小企業 人力的 圓滑한 供給 推進

■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활용도 제고

- 효율적 중소기업 인력지원방안 추진
 - 병역지정업체 10년이상 경과시 인원배정 제외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비율의 점진적 상향조정
 - (97년) 산업체 배정인력의 28% → (2000년) 50% 수준
- 벤처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지정업체가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 소속 전문연구요원을 전직 · 파견 가능토록 개선

■ 유휴인력의 산업활용 제고

- 퇴직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원로봉사단」 활용 강화
 - 전문지원팀을 구성하여 내실있는 인력지원 실시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개선

- 연수취업제도의 도입
 - 연수생이 일정기간 연수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 신분으로 취업자격을 부여
 - 취업자격 부여시 고용주 추천, 한국어 소통 가능성 등을 평가
-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재경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급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 주요정책 사항 결정
- 연수생 선발제도 개선
 - 선발과정의 비리방지 및 외교적 마찰방지를 위해 모집기관은 선발기준만 정하고, 연수생 선발권한을 송출국에 일임하는 방안 강구
 - 연수생 선발과정에서의 문제야기 송출국은 송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강구
- 사후관리기능 강화
 - 민간업체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던것을 노동관계법령 소관사항은 노동부, 출입국 관련사항은 법무부,

기타사항은 모집기관이 담당토록 변경

- 법무부, 안기부, 경찰청 이외에 노동부, 중기청요원도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의 편성·운영을 통해 불법 취업자 단속기능을 강화

6. 地方中小企業의 育成 發展

가. 地方中小企業 育成을 爲한 支援 持續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지속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시설개체, 입지 등 지원(98년 5,042억원)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 지원
 - 15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 수도권 50%, 일반지역 55%, 낙후지역 60%, 특별지원지역 70%

나. 地方農工團地의 運營 效率性提高

■ 지방 농공단지의 운영제도 개선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지속
 - 지원규모 : (98) 900억원
-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 기 지원을 받아 상환을 완료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지원
 - 시·군의 추천절차 생략으로 대출소요시간 단축
- 세제지원 확대 추진
 -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대체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

■ 입주단지의 부실화 방지

-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제조업 위주에서 보관창고업, 도·소매업, 운송업 등으로 입주허용 확대 추진
- 기존 단지의 부실화 방지
 - 휴폐업 및 미분양 공장에 대한 대체 입주 촉진
 - 농공단지와 인접연결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로 입주 유인 제공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판로지원 확대
 - 농공단지간의 정보교류, 공동애로 해결,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등을 위한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 입주기업에 대한 대기업과의 계열화 유도
 - 공동전시판매장 개설 등 추진

다. 地方中小企業 支援體制의 補強

-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건립 확대
 - (97) 강원, 충북, 경북 → (98) 3개소 추가
-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기능의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지방청(사무소)의 「금융지원협의회」와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의 기능활성화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시책 마련

7. 영세 小企業 支援

■ 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

- 소기업지원계획의 수립·추진
 - 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98. 1/4분기 중 자금·인력·입지 등을 포괄한 종합지원 계획 수립
 -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 확대 등 신용보증지원 시책도 함께 반영
- 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확대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추진
 -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요령 및 외국인 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 운용요령 개정
- 어음보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
 - 기금운용규모 대폭 확대 등 어음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소기업들의 연쇄부도 위험을 저하

■ 소규모유통업의 구조개선사업 추진

- 소규모점포의 시설현대화 추진
 - 점포당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시설자금을 전액지원
 - 98년 중 29억원 지원
 -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도입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 98년 중 60억원 지원)
- 영세유통업자가 밀집된 시장재개발사업 활성화
 - 시장재개발·기존시설 개보수 등에 장기저리자금 지원
 - '98년 중 중앙정부자금 648억원 지원

■ 여성 경영기업의 우대 추진

- 자금 등 중소기업시책 운용시 우대
 - 구조개선자금·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의 대상기업 선정시 가산점 부여(5점)
 - 협동화·입지·정보화사업 등 평가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산점 부여(5점)
- 여성 경영기업의 기술·경영혁신 등 지원
 - 중진공의 기술지도 수수료 감면 및 우수제품의 전시회 참가 부담금 면제
 - 이업종교류회 결성시 기술융합화자금 우선 지원
 - TV 상품전·인터넷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시 우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
중소기업범주 근로자수등 계산기준
대통령령 제 15,552호 (1997. 12. 31)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였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가 아닐 것

제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각각 창업일·합병일 또는 공동사업장설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수로 한다.

1.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중에 창업한 기업
2.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중에 2이상의 기업이 합병하여 설립된 기업 또는 2이상의 기업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인 기업
3.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중에 2이상의 개인인 기업이 합하여 설립된 공동사업장인 기업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은 각각 창업일·합병일 또는 공동사업장설립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은 각각 창업일·합병일 또는 공동사업장설립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한 기업
2. 당해 사업연도중에 2이상의 기업이 합병하여 설립된 기업 또는 2이상의 기업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인 기업
3. 당해 사업연도중에 2이상의 개인인 기업이 합하여 설립된 공동사업장인 기업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

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하고, "합병일"이라 함은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을 말하며, "공동사업장설립일"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등록을 한날을 말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

제6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중소기업청장

별표1의 45의 상시근로자수란 "200"을 "300"으로 하고, 동표의 45302란 앞에 4521란 및 452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21	건물종합건설업	400
4522	토목건설업	400

별표1의 55101의 상시근로자수란 "100"을 "200"으로 하고, 동표의 8511의 상시근로자수란 "100"을 "200"으로 하고, 동표의 8511의 상시근로자수란 "100"을 "200"으로 하며, 동표의 끝에 92192란 및 9233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2192	유원지 운영업	50
923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50

별표1의 50110의 상시근로자수란, 동표의 5030의 상시근로자수란, 동표의 50401의 상시근로자수란, 동표의 51의 상시근로자수란, 동표의 51991의 해당업종란 및 동표의 521의 해당업종란중 "도·소매업진흥법"을 각각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영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중소기업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중소기업(대통령령 제14695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을 제외한다)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에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법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았거나 이 영 시행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998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98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표

노동부 고시 제97-25(12.30)

노동부는 97.12.30일 노동부 고시 제97-57호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63조에 의거, 1998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이고시의 시행시기는 1998년 1월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다.

1998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1998년도 산업재해 보상보험요율

(단위 : 100분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244
금속 및 비금속광업	158
채석업	85
석회석광업	58
제염업	14
기타광업	14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35
2. 제조업	
식품제조업	13
담배제조업	6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7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12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32
목제품 제조업	25
펄프 및 지류제조업	16

사업종류	요율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	5
인쇄업	12
경인쇄업	7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5
화학제품 제조업	14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6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6
고무제품 제조업	13
도자기제품 제조업	14
유리제조업	12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21
시멘트 제조업	15
시멘트원료채굴 및 제조업	2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0
금속제련업	7
금속재료품 제조업	24

1998년도 산업재해 보상보험요율 (*계속)

(단위 : 100분율)

사업종류	요율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	29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123
도금업	18
기계기구제조업	18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0
전자제품 제조업	5
선박 건조 및 수리업	24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갑)	12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을)	17
계량기·광학기계기타·기타정밀기구제조업	8
수제품 제조업	10
기타 제조업	18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7
4. 건설업	
일반건설공사(갑)	29
일반건설공사(을)	29
중건설공사	39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3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 운수업	5
자동차여객운수업	12

사업종류	요율
소형자동차운수업	14
화물자동차운수업	33
수상운수업	18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6
항공운수업	6
운수관련 서비스업	5
창고업	13
통신업	7
6. 임업	
벌목업	258
기타의 임업	18
7. 어업	60
8. 농업	14
9. 기타의 사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10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1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21
건설기계관리사업	41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8
기타의 각종사업	5

* 해외 판권자 요율 : 16

98 자기자본 이익율 및 회전율 고시

국세청 고시 제97-25(12.30)

국세청은 98년도 적용 자기자본 이익율 및 자기자본 회전율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 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영업권 평가시에 적용하는 '1998년도 적용 업종별 자기자본 이익율 및 자기자본 회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이 고시의 적용시기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업종별	자기자본이익률(%)	자기자본회전율(회)	적용범위
○ 어업		20.86	
○ 광업			
석탄광업	—	1.99	
금속 및 기타광업	5.10	1.85	채석업
○ 제조업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가공업	1	8.93	
낙농품	—	12.38	
곡물가공업, 전분 및 사료	6.74	5.76	
기타식품	5.61	5.08	
음료	—	4.13	
방직, 직조 및 섬유가공업	—	3.40	
기타 섬유제품	9.23	5.23	
편조업	5.70	6.58	
의복 및 모피제품	8.08	5.90	
가죽, 가방 및 마구류	12.67	6.57	
신발	—	11.06	
목재 및 나무제품	1.17	6.05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45	3.06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81	5.3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가공업	4.88	4.95	
기초 화합물	4.12	2.61	
기타 화학제품	8.19	2.83	
화학섬유	0.45	3.49	
고무제품	4.94	4.16	
플라스틱제품	13.49	4.50	
유리 및 유리제품	3.52	2.10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4.04	2.64	
제1차철강	5.54	2.17	
제1차비철금속	—	5.57	
금속주조업	10.62	5.93	

업 종 별	자기자본이익률 (%)	자기자본회전율 (회)	적용범위	
구조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14.15	5.93	광학기계제외	
기타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7.30	4.25		
일반목적용 기계	16.09	4.52		
특수목적용 기계	7.66	5.84		
기타가정용 기구	3.43	6.45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9.49	3.86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7.73	3.71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18.118	4.50		
절연선 및 케이블 및 기타 전기장비	6.66	5.02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7.65	2.86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10.63	3.34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3.18	4.22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	10.82	5.28		
사진 및 광학기계	19.06	6.12		
자동차용엔진 및 자동차	4.69	5.84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0.78	7.67		
자동차부품 제조업	9.82	5.85		
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	—	2.74		
철도, 항공기 및 기타운송장비	—	3.39		
가 구	9.16	8.38		
기타제조업	—	5.92		
○ 전기·가스 및 증기업				
전기업	5.71	0.79		
가스 및 증기공급업	12.12	1.87		
○ 건설업	4.35	6.53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자동차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6.97	11.39		자동차 제외
도매 및 상품중개업	9.34	16.05		
무역업	5.18	19.96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선업	4.36	12.65		

업종별	자기자본이익률(%)	자기자본회전율(회)	적용범위
종합소매업	7.88	11.99	
백화점	10.52	9.08	
일반소매업	—	14.51	
○ 숙박업	3.79	1.40	호텔업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육상운송업	9.08	8.35	철도운송업제외
수상운송업	—	12.23	
항공운송업	—	5.55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8.48	4.41	
통신업	13.18	1.63	
○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	0.81	
정보처리 및 컴퓨터이용관련업	11.57	6.37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	19.25	7.85	
광고업	4.70	7.76	
○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산업	19.03	2.06	
운동·경기 및 기타오락관련산업	—	3.66	

本誌 IMF克服 캠페인

一等商品에 一等包裝으로 輸出增大

- ◆ IMF의 근원적 문제는 외화부족에 있음으로 외화를 많이 벌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확대가 요체입니다.
- ◆ 그럼으로 수출경쟁에서 이길수있는 「일등상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 ◆ 여기에 내용상품을 보기전에 첫선을 보게되는 「포장의 일류화」로 수출증대를 성공 시켜야 합니다.